

제6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5. 11. 27.(금) 09:30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최성준 위 원 장
김재홍 부위원장
허원제 상임위원
이기주 상임위원
고삼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음

5. 회의내용

① 성원보고

② 국민의례

③ 개회선언

④ 서면회의 결과 확인

- 제63차 서면회의 결과 <의결안건> 2건, 보고안건 1이 원안대로 의결·접수되었음을 보고함

⑤ 회의공개 여부 결정

- 의결안건 '다'는 “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임명 동의에 관한 건”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고, 나머지 안건은 공개로 진행함

⑥ 의결사항

가. 2014년도 방송평가 결과에 관한 건(2015-64-277)

- 방송법 제31조(방송평가위원회) 및 「방송평가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, 방송사업자가 2014년도에 실시한 방송의 내용·편성·운영 영역에 대한 평가결과를 김재영 방송기반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심의한 결과,
 - 지상파TV, 지역민방, 지상파라디오, 지상파 DMB TV, 종편·보도PP, MSO, 위성방송, 홈쇼핑PP 등에 대한 2014년도 방송평가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함

나. ㈜LG유플러스 및 관련 대리점의 단말기유통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(2015-64-278~279)

- ㈜LG유플러스 및 관련 대리점이 '14.10.1. ~ '15.9.30. 기간 중 주한미군 주둔지내에서 주한미군 가입자 유치를 하면서 법인명의 개통, 공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 지급, 개별계약 체결 등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(안)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심의한 결과,
 -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(금지행위)제1항제5호 및 단말기유통법 제5조(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)제1항 등을 위반한 ㈜LG유플러스 및 관련 대리점에 대해 같은 법 제53조(금지행위에 대한 조치)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 중지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방안 마련 등 시정조치를 명하고,
 -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(금지행위)제1항제5호 및 단말기유통법 제4조(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), 제5조(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)제1항, 제7조(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)를 위반한 ㈜LG유플러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(금지행위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), 단말기유통법 제15조(과징금) 제3항에 따라 1억8천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,
 - 단말기유통법 제4조(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)제6항, 제5조(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)제1항, 제7조(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) 제2항을 위반한 LG휴넷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

다.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임명 동의에 관한 건(2015-64-218~280) (비공개)

-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임명할 EBS 사장에 대한 임명 동의 안건에 대해 신영규 행정법무담당관으로부터 보고받고,
- 위원장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우종범을 EBS 사장으로 임명 하는데 동의함

7] 보고사항

가. ㈜케이티의 「맞춤형 결합상품」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

- ㈜케이티의 결합서비스 이용약관 변경과 관련, 이용약관에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으로 부터 보고받고,
-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정책국장이 ‘경고’ 조치 하기로 원안대로 접수함

6. 폐 회 (11:18)